



시설관리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17
제정일자	2013.06.24
개정일자	2019.07.01
개정번호	Ver. 1
총페이지	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시설에 관한 사항을 사전검토, 조정하기 위한 시설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학생부처장, 산학협력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사무부처장, 건축학과장, 실내환경디자인학과장, 시각디자인학과장, 관리영선팀장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은 전문적인 조사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들 수 있다. <개정 2019.07.01>

제3조(임기) 본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 동안이며, 보직 변경 시에는 신규보직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4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시설관련 사업계획 심의
2. 시설관리 성과평가
3.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항
5. 임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07.01>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

제6조(의결) ①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연구시설 보수(변경)요청자 에게 관련서류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모든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제9조(신설) 본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